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
특별법 시행령 제정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무총리 산하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은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」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, 동 법률에서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, 실무지원단 설치·운영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므로,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(안 제1조)

이 영은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지원위원회 위원 구성·임기·해촉 등(안 제2조부터 안 제4조)

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등 19명, 강원특별자치도지사, 지방자치·도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.

다. 실무위원회 구성·임기 등(안 제3조부터 안 제5조)

실무위원회에 참여하는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19개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, 강원특별자치도 부지사, 지방자치·도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자 함.

라. 실무지원단 구성·운영 등(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)

유사한 성격의 다른 실무지원단과 통합하여 구성·운영,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임기제공무원 채용, 중앙행정기관·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·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실무지원단의 원활한 구성·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(안)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)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(이하 “지원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기획재정부장관·교육부장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통일부장관·법무부장관·국방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문화체육관광부장관·농림축산식품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보건복지부장관·환경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해양수산부장관·중소벤처기업부장관·국무조정실장·법제처장 및 산림청장
2. 강원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
3. 지방자치, 도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
제3조(위원의 임기) ①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- ② 제2조제3호 및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해촉) 국무총리는 제2조제3호 또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(解囑)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5조(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 ①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기획재정부·교육부·과학기술정보통신부·통일부·법무부·국방부·행정안전부·문화체육관광부·농림축산식품부·산업통상자원부·보건복지부·환경부·고용노동부·국토교통부·해양수산부·중소벤처기업부·국무조정실·법제처 및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

2. 강원특별자치도의 부지사

3. 지방자치, 도시개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

②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제6조(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) ① 지원위원회 위원장(이하 이 조, 제7조, 제8조, 제11조에서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고, 지원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지원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처의 장(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제외한다), 관계 부처 공무원, 관계 기관·단체의 임직원 및 민간전문가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8조(실무지원단) ① 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. 이 경우 실무지원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실무지원단과 통합하여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

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실무지원단 소속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.

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운영 또는 지원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조사·연구 의뢰) ①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,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·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·연구를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원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설문조사,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집할 수 있다.

제10조(수당 등)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,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운영 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명칭) 2023년 6월 10일까지 이 영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도지사로, 같은 영 제5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도로 본다.